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71
----------	------

2017년 9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8월 22일 이윤희 의원의 41명
2. 회부일자 : 2017년 8월 24일
3. 상정일자 :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9월 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윤희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의 활성화와 공익성 강화를 위해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합법화 취지를 조례 목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조례 목적에 맞게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주관 행사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의 시설사용계약 대상 제외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첨부서류 사항을 간결화하고, 그 외 반복되는 자구를 축약 사용하는 등 그 내용을 명료하게 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 사업 조례의 목적을 합법화 취지에 맞도록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입법목적을 추가·확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제2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대한 사항을 간결하게 재규정함.(안 제3조)
-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할 때 가맹사업법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 3) 기타사항 :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음식판매자동차(이하 ‘푸드트럭’) 영업자들의 영업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 사업 진출¹⁾이 예상되고 있음.
- 매장형 가맹점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업체가 상대적으로 창업비용이 적게 드는 푸드트럭 사업에 진출할 경우, 자본력이 취약한 청년 및 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사업 진입기회 잠식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 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 사업) 진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이에 본 개정안은 푸드트럭 합법화의 목적에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추가 신설하여 공익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업체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보전하며, 행정필요 서류 규정의 정비 등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음.

2 주요사항 검토

조례 목적의 명확화 (안 제1조)

1) 제너시스 BBQ 푸드트럭 사업 진출 기사화(조선비즈, 2017.6.29字)

- 개정안은 푸드트럭 사업을 양성화하고자 했던 암묵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조항에 신설·추가하여, 조례안의 공익성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고 할 수 있음.

<표>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 ----- ----- ----- -----

□ 첨부서류 규정의 간소화 (안 제3조)

- 현행 조례의 규정이 영업장소별로 각각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 있어, 그 내용과 구성이 다소 복잡하고, 영업장소(제2조) 관련 사항이 개정되는 경우 첨부서류 조항도 연동하여 변경되는 등 조례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시설관리자인 경우’와 ‘시설관리자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 필요 첨부서류를 명시하는 내용인 바, 기존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함으로써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편한 표현으로 개정된 사항이라고 하겠음.

<표>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및 장소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및 장소			
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접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의 지역: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영업자격 제한 규정(안 제5조제2항)

- 개정안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²⁾를 푸드트럭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의 허가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표>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 기간 등)</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 기간 등)</p> <p>② 시장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 프랜차이즈업체의 푸드트럭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배제조항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지방자치법 등)과의 관계에서 법해석상 이견(異見)이 있음.
- 긍정적인 견해를 보면,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여 프랜차이즈업체의 푸드트럭 사업 진출을 규제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치단체장의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재량행위를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명확히 그 범위를 일부 한정하여 명시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음.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말함.

- 반면에 개정안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면, 자치단체장의 공용재산 사용·수익 허가권은 집행부의 전속적인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써 관여할 수 없고, 특정 직종의 종사자(프랜차이즈업체)들의 공용재산 사용·수익의 기회를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부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를 경우에는 개정안을 위법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 위 견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법률자문결과)

<표> 법률 자문 결과

의견	주요 내용
<p>합법 1 (집행부)</p>	<p><법률우위의 원칙 위배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 여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p> </div> <p>- 가맹본부 등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는 시행규칙이 정한 영업장소에서 아무런 영업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고,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좀 더 구체화하여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가하였으며 식품위생법에서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므로 조례안이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움</p> <p><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 여부)></p> <p>- 가맹본부 등이 조례안이 정하는 일부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위 조례안이 영업권을 제한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설·장소에 대한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므로 위 조례안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로서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가능함</p>

<p>합법 2 (입법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는 시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조례의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를 무조건, 전면적,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시설사용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시장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개정하려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p>위법 1 (입법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트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의 허가 여부는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행정처분이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률에 위반해서는 아니 되는 바 이러한 푸드트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의 허가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라 하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재량이라고는 볼 수 없고,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임. -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권리의 제한에 해당하며, 이와 같이 가맹사업자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을 해야 지방자치법 제22조 조항에 반할 위험성이 제거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조례안으로 허가의 상대방을 제한하여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는 프랜차이즈 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할 여지가 있음.
<p>위법 2 (입법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는 기본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량행위라고 보아야 하나, 이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단해 허가신청에 대한 당부를 판단받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단해 국민들로부터 아예 박탈하는 것임. - 동 개정안은 특정 직종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공용재산의 사용·수익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검토하건데, 푸드트럭 사업의 도입배경이 사회적 소수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과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력으로도 특유의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

가 특색 있는 거리문화 창출을 통해 활력 있는 도시문화를 형성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음.

- 이러한 정책적 목적을 법제화 방식으로 반영한 결과물이 현행 조례이지만,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적 변화(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 사업 진입 등)에 규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공익’을 실현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 소수세력에 대한 최소한도의 기회부여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이면서도 다각적인 시각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프랜차이즈 업체의 진입제한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관련 상위법인 식품위생법령에 프랜차이즈 업체의 진입 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분쟁 가능성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보이는 바, 앞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을 건의하는 등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그 밖의 개정사항

- 그 밖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며, 축약하여 쓰는 용어를 일괄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임.
- 이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를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1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22일

발 의 자 : 이윤희, 강성언, 김경자(양천), 권미경, 김광수(도봉), 김동승, 김동윤, 김영한, 김용석(도봉), 김용석(서초), 김정태, 김제리, 김진철, 김창원, 김현기, 김혜련, 김희걸, 남창진, 맹진영, 문종철, 박기열, 박마루, 박호근,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우형찬, 유동균, 유 용, 이명희, 이복근, 이순자, 이신혜, 이정훈, 이혜경, 장인홍, 장홍순, 전철수, 조상호, 최영수, 한명희, 황규복 의원(42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의 활성화와 공익성 강화를 위해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합법화 취지를 조례 목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조례 목적에 맞게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주관 행사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의 시설사용계약 대상 제외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첨부서류 사항을 간결화하고, 그 외 반복되는 자구를 축약 사용하는 등 그 내용을 명료하게 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음식판매자동차 사업 조례의 목적을 합법화 취지에 맞도록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이라는 입법목적을 추가·확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나. 제2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대한 사항을 간결하게 재규정함.(안 제3조)
- 다.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할 때 가맹사업법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제2항 중 “장소”를 “시설·장소”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시설사용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중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을 “시설사용계약”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를 “시설사용계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 적) 이 조례는 <u>음식판매자 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u> 및 <u>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u> 등을 위해 「<u>식품위생법 시행규칙</u>」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 적) ----- ----- <u>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u> ----- ----- ----- -----.</p>
<p>제3조(첨부서류) <u>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u>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u>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u></p> <p><u>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u></p> <p><u>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 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u></p>	<p>제3조(첨부서류) <u>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u>----- ----- ----- -----.</p> <p><u>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 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u></p> <p><u>(삭제)</u></p>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삭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
한 서류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및
장소

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삭제)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
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
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삭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
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
용·수익허가 등 시설·장소의 사
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
라 한다)에 관한 서류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삭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삭제)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삭제)

6. 그 밖의 지역: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삭제)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5. (생략)

<신 설>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설·장소 -----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 시설사용 계약-----
-----.

1.~5.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 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 사항) -----

----- 시설사용계약 -----

-----.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

----- 시설 사용계약, -----
-----.

② (현행과 같음)